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12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김민전・최수진・조경태
서천호・서지영・장동혁
조배숙・김장겸・최보윤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

조의6 신설 등).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대체인력의 배치) ①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휴가, 연수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인력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인력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유치원교사”를 “유치원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6(대체인력의 배치) ①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휴가, 연수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인력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인력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 ---------- ----------

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유치원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